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라온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1. 2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준법감시지원·위험관리전담 조직 구성 및 감사보조조직 독립성 확보

저축은행 내규「내부통제기준」제15조 및「위험관리기준」제18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지원 및 위험관리전담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고

「감사직무규정」제7조에 따르면 감사보조조직 내의 감사인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의 甲 과장은 기획총무팀에서 당행의 총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감사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지원 및 위험관리전담 조직을 구성·유지하고, 감사보조 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회, 타부서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보조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직무집행 및 이사회 운영 실효성 제고

회사의「정관」제30조 등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집행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일반경영·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라온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2인(비상근)은 저축은행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저축은행의 경영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및 이사회 운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PF성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제7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사업장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진행상황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26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 등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라온저축은행은 사업장별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후관리카드를 장기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공정지연 등의 사업장 진행상황을 사업성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사업장별 사후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장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카드에 충실히 기재하고 이를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